

# 서북병원 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

[의료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018. 5.

위원장 연락처	직위:병원장	성명: 박 찬 병
	전화번호:02-3156-3001	이메일: bluecow12@seoul.go.kr
담당 실무자 (지원전담인력)	직위:진료기획팀장	성명: 김 상 호
	전화번호:02-3156-3238	이메일: sh2810@seoul.go.kr

# 1. 조직 및 구성

## ① 구성 기준 및 절차

### 가. 구성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한다.

####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사례 심의의 필수 참석자 또는 위원회의 다양성과 사례심의의 긴급성 및 사례 해결의 시기적절성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모를 정한다.

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8명, 간사 1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 자격 및 능력

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 및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주요 심의대상에 대한 의학적 심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
- ② 환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
- ③ 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2인.

나) 위원 구성이 모두 남자 또는 여자로만 이루어진다면, 한 가지 전문분야에 치중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위촉위원(외부위원)

가) 위촉위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써 종교계·법조계·윤리학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위촉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①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환자 및 가족 그리고 의료인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헌법을 포함한 국내

법과 생명윤리 국제규범을 준수하는데 동의한 자여야 한다. 병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병원 윤리위원회 명단 및 자격 기재 문서를 통해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 경력 등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하는데 동의한 자여야 한다.
- ③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신청서, 심의내용, 환자에 대한 정보 등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를 지키는 데 동의한 자여야 한다. 병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윤리적인 심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자여야 한다.

#### 4) 위원장(당연직)

- 가) 위원장은 회의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며, 토론을 이끌어가는 회의 진행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적·법적·의학적 측면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여야 한다.
- 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다.
- 다)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5) 부위원장(당연직)

- 가) 부위원장은 회의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며, 토론을 지원하는 윤리적·법적·의학적 측면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여야 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다.
- 다)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6) 위원(당연직)

- 가) 위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환자 및 가족 그리고 의료인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고, 회의(토론)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적·법적·의학적 측면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나)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의뢰한 사항을 이해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다.

다)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나. 절차

- 1) 2018년 5월 의료윤리분과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윤리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였으며,
- 2)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관련 제규정(서북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은 규정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하였음.

**② 위원회 현황**

가. 위원구성

총 위원수 (위원장 포함)	외부 위원 수	비 의료인 수	비고
13명	2명	4명	

나. 위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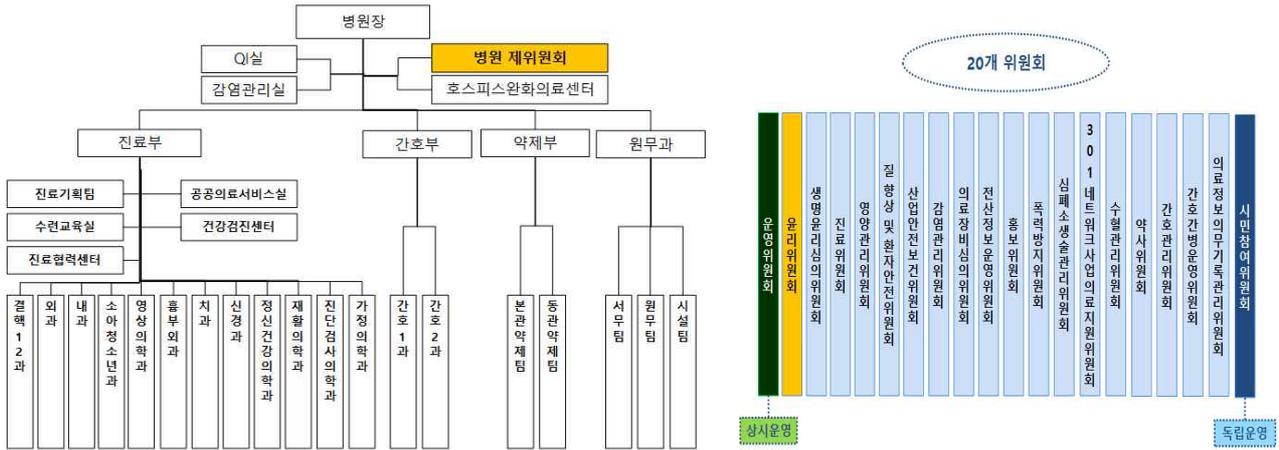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전문분야	비고
1	박찬병	남		서북병원	병원장	의학,보건	위원장
2	서해숙	여		서북병원	진료부장	의학	부위원장
3	박영숙	여		서북병원	간호부장	간호학	위원
4	조정숙	여		서북병원	약제부장	약학	위원
5	정태명	남		서북병원	원무과장	병원행정	위원
6	조영수	여		서북병원	결핵과장	의학	위원
7	임현석	남		서북병원	내과장	의학	위원
8	송은향	여		서북병원	신경과장	의학	위원
9	좌경희	여		서북병원	재활의학과장	의학	위원
10	박신애	여		서북병원	가정의학과장	의학	위원
11	홍현선	남			목사	종교	외부위원
12	이상훈	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법률	외부위원
13	김상호	남		서북병원	팀장	보건행정	간사

### ③ 전담 지원 인력 및 조직 현황

가. 전담 조직명 : 윤리위원회

나. 조직도

#### 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조직도



#### 2) 윤리위원회 조직도



다. 전담지원인력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전문분야	비고
이왕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주무관	사회복지	
백삼옥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담당자	간호사	기간제 담당 채용

## 2. 운영 규정 및 지침

### ① 근거 규정

#### 1. 근거 규정

가. 규정명 : 서북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나. 제정일시 : 2003년 10월 15일

다. 최근개정일시 : 2018년 5월 9일

### ②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가. 규정 제정 목적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 및 의료서비스 향상 관련 사항과 전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직원의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주요내용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간사 1명, 외부위원 2명

2) 위원회 운영 : 회의운영, 심의·의결사항, 절차 등

### ③ 위원회 역할 및 책임

#### 가. 역할

윤리위원회는 병원 내에서 필요한 심의, 상담, 교육, 통계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료윤리 전반을 관리한다.

1) 생명존엄성 및 의료행위에 따른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

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②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③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상담
  - ④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 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⑦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의료윤리의식 제고와 윤리적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4)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5) 윤리적 갈등 발생 시 진상조사,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6) 윤리적 갈등과 관련한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 7) 환자 입.퇴원 결정과 관련한 의료 윤리적 사항
  - 8) 장기이식대상자의 윤리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
  - 9) 직원의 윤리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0) 직원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항

#### 나. 책임

##### 1) 위원회의 독립과 의무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의학적 또는 법률적 확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③ 위원은 비밀 준수의 의무를 진다.
- ④ 위원은 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 ⑤ 위원은 환자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한다.
- ⑥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의견이나 다른 위원들의 견해를 존중한다.

## 2) 병원장의 책임

병원장은 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데 있어서 환자 및 가족 그리고 의료인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병원장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이의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② 병원장은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③ 병원장은 윤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의 적합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 3) 병원 종사자의 협조 의무

의료인 등 기관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가 윤리위원회 임무 수행과 관계되는 경우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3. 활동 계획

## ㉠ 심의 절차 및 시기 등 위원회 운영 계획

### 가. 심의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시 간사는 심의를 위한 제출된 자료가 완전한지 검다.

### 나. 심의 기준

- 1)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심의·의결사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2) 헌법상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 그리고 생명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여 심의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사례를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데 있어 윤리적,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이며, 시기적절하게 심의한다.

## 다. 회의 개최 기준

### 1) 성립의 최소 요건

- 가) 위원회 회의는 생명존엄성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때 소집한다
- 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
- 다) 회의 개최 성립에 요구되는 최소 위원의 수인 정족수는 하나의 전문직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사, 간호사, 법률가, 종교인 등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들이 분포되도록 한다.
- 라)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회의 개시에 앞서 회의 개최 성립 요건에 맞게 구성원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2) 이해관계의 회피

- 가)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안전 및 환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회의 개시에 앞서 참석 위원들이 심의 대상과의 이해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 회의 방법

- 1) 윤리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회의로 한다.
- 2)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3) 윤리위원회는 심의 시 심의 대상에 관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심의신청자는 물론 이해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들은 결정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윤리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은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자문목적의 회의 참석으로 인해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알게 되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초빙될 수 있다.
- 5) 윤리위원회 간사는 회의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상담 활동 및 상담실 운영 계획

가. 상담 제공 시간 : 평일 09:00 ~ 18:00 (수시)

나. 상담 제공 장소 : 서북병원 25병동 상담실

다. 상담 제공 인력 : 25병동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사, 법조인, 행정 등)

라. 주요 상담 내용

- 1) DNR(Do Not Resuscitate)에 관한 사항
- 2) 생의 말(end of life) 치료에 관한 사항
- 3) 치료 보류/거부에 관한 사항
- 4) 환자 권리에 관한 사항
- 5) 어려운 치료 결정에 관한 사항
- 6) 대리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 7) 조직 윤리에 관한 사항 등

마. 상담 후 처리 방안 및 계획

- 1) 상담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심청서를 작성하고 윤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사례 심의 결과 및 기타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상담 및 윤리 자문 요청자와 환자, 가족(대리인 포함), 주치의 등에게 통지한다.

## ③ 교육 시행 계획

가. 교육 대상 : 병원 전직원

나. 교육 내용

-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쟁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려운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윤리교육, 훈련 등을 제공·촉진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 내의 자체적인 교육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한다.
- 병원 직원인 구성원을 위한 위원회의 교육 활동은 가능한 현존하는 교육 활동과 조화되도록 한다.

#### 1) 위원회 자체 교육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의 윤리적, 법적, 의학적 측면에 대한 정기 교육에 대한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 2) 병원 자체 교육

윤리위원회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 종사자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윤리적 규범, 법적 금지 및 제한 행위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

#### 다. 교육 제공 시기 및 주기

- 연중(교육내용에 따라 분기/반기/연도별 정기교육 시행)

#### 라. 교육 이수 관리

- 위원회 구성원 및 병원 종사자의 교육은 병원자체교육(법정필수교육, 공통필수교육, 특성화 교육 등)과 의료인 보수교육(외부) 등으로 시행하고, 교육이수(결과)에 대해서는 서무팀(교육담당자)에서 통합 관리한다.

### 4 기타 위원회 활동 계획

#### 가. 통계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원내 OCS/EMR을 활용하여 연명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한다.

#### 나.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기록의 보존)에 의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후 그 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간사는 심의, 상담 및 교육 등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취합하여 보존한다.

#### 다. 보고

해당 기관 내 연명의료 관련 통계 분석,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변경사항 등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다.

라. 열람제공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연명으로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4. 연명의료 시술 현황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	X	○	X

○ 4가지 의학적 시술별 기준

의학적시술	의료장비 (품목분류명)	세부 기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D20500)	▫ 해당 의료장비를 의료장비 신고 기준 <sup>주)</sup> 에 따라 심평원에 신고한 기관
혈액 투석	인공신장기 (D21400)	
인공호흡기 착용	인공호흡기 (D20200)	
항암제 투여	-	항암제 투여가 가능한 기관

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